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4. 24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·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.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함.(안 제12조)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중 “60제곱미터이하인”을 “85제곱미터이하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세 무 과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석 명 범 ☎ 940-4220
	시 세 담 당	이 용 석 ☎ 940-4238
	담 당 자	정 재 현 ☎ 940-4231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본문 생략) 1.~2.(생 략) 3. 전용면적 <u>60제곱미터이하인</u>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,000분의 3으로 한다.	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(현행과 같음) 1.~2.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85제곱미터이하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